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88

제출년월일 : 1993. 1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시대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종축장 업무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○ 종축장 소재지 위치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에서 청주시 주중동으로 조정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시대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업무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종축장의 종금 생산 및 사료종자 생산 업무 기능을 삭제하고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업무 기능을 추가하는 것임.

3. 근거법령

○ 해당없음

첨 부 : 1.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2. 신구조문대비표

3. 기타 참고자료

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 (설치)중 "우량종축 및 종금과 사료종자의 생산과 가축사육 기술보급을 위하여 를 "가축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과 축산,사료에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" 로 한다.

제 2조 (위치)중 "청원군 북일면 주중리" 를 "청주시 주중동" 으로 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조 (업무) 종축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.

1.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
2.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
3. 기타 가축사육 및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 1 조 (설치) 우량종축 및 종금과 사료 종자의 생산과 가축사육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 종축장 (이하"종축장" 이라 한다)을 둔다.	제 1 조 (설치)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과 축산.사료에 관한 시험연구및 기술 보급을 위하여 . . . . .
제 2 조 (위치) 종축장은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산 147번지 에 둔다.	제 2 조 (위치) . . . . . 청주시 주중동 . . . . .
제 3 조 (업무) 종축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. 1. 우량종축 종금의 생산 2. 우량사료 종자의 생산 3. 가축사육 기술 보급 4. 기타 가축사육 및 사료종자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제 3 조 (업무) . . . . . . 1.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2.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3. 기타 가축사육 및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참 고 사 항

○ 현행 충청북도 종축장 조례전문

제1조 (설치) 우량종축 및 종금 (種禽)과 사료종자의 생산과 가축사육기술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축장(이하 "종축장" 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2조 (위치) 종축장은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산 147번지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종축장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

1. 우량종축 종금의 생산
2. 우량사료 종자의 생산
3. 가축사육 기술보급
4. 기타 가축사육 및 사료종자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 (장장(場長)) ①종축장에 장장(場長)을 두며 지방농업연구관(5급)으로 보한다.

②장장(場長)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장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장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6조 (分掌設置) 종축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종축장의 분장을 둘수 있다.

제7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63. 1. 11 조례 제 152호)

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66. 4. 14 조례 제 23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66. 12. 24 조례 제 253호)

이 조례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69. 8. 14 조례 제 33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0. 12. 15 조례 제 45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0. 2. 29 조례 제 98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2. 2. 5 조례 제 115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